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886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우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가단53390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822,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35,822,46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5행부터 7면 9행까지(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의 누나 J는 채무자 D의 아내 H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였는데, J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피고 C에게 매수를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 결과, 이 법원의 P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채무자 D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C의 누나인 J가 D의 아내인 H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D의 배우자 H와 J는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10,000,000원이 매수인이 아닌 J의 계좌(P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었는데, 피고 주장에 따르면 위 계좌 통장은 H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H와 피고 C의 누나 J는 경제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대하여 노부모 봉양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매매 동기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이 사건 식당의 건물이나 부지가 아닌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매매 동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⑤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존재 및 그 채무 액수 등에 의하여 D의 자력 내지 신용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들은 Q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Q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간자로서 J가 피고들에게 매수를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Q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인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감정평가액 890,671,96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점, ⑧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기일을 2017. 5. 10.로 정하였는데, 잔금 기일까지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잔금 기일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한 점, ⑨ 나아가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2017. 9. 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2017. 8. 11.)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경선, 판사 김리사

별지

목 록

1. 당진시 S 대 118㎡
2. 당진시 T 대 297㎡
3. 당진시 U 대 972㎡
4. 당진시 S, T, U

[도로명주소] 당진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일반음식점 247.78㎡

2층 단독주택 181.16㎡, 끝.

1)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피고 C의 누나 J의 권유로 Q를 소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D 부부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